

분과위원회 설치(안) 회의자료 - ② 재판제도분과위원회

1.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 ▣ 사법행정의 주요 기능과 역할 중 하나로서 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과 핵심적 기능은 재판 업무에 있음
 -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한 재판제도의 연구 및 발전은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종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재판제도를 연구·검토·지원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법원행정처의 규모 축소, 탈법관화와 더불어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재판제도의 연구·검토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2.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 방안

- ▣ 위원 구성 방안 ⇨ 내부위원(법관, 법원공무원), 외부위원
 - 법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 규칙 제8조제6항(“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에 따라 위원 구성 시 공개적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신청 또는 추천의 이유(전문성, 그 동안의 경험 등)를 요청함으로써 위원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
 - 후술하는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논의 안건의 특성상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모든 위원이 각 안건을 순차적으로(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順)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각 안건의 순차적 논의에 따라 안건의 성격별로 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등 위원의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도 가능

▣ 간사 지정 방안

-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판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심의관을 간사로 지명하거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사법지원심의관을 공동 간사로 지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3.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부의·회부 예상 안건 설명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 논의의 필요성

- 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구성원의 비대등성 때문에 진정한 합의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실질적으로 대등한 3인의 숙려에 따른 결론이 합의부 본연의 모습임.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토론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는 최소 법조경력 16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므로, 종전보다 경험과 연륜이 높은 법관들에 의한 충실한 심리가 기대됨
-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등 법관인사시스템의 변화로 종래 합의부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함
- 이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2019년 전국 지방법원 24개 재판부에서 경력대등부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 중임. 그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에 확대할 필요성 여부와 범위,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각급 법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2018. 1. ~4.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간담회
 - 2018. 7. 사법지원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간담회
- 2018. 7. 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의결

- '지방법원의 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고 향후 인사 여건에 따라 이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2018. 8. ~ 12. 총 3회에 걸쳐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를 위한 법원 간담회

● 2019. 2. 25.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시범실시

- 총 24개¹⁾ 재판부(민사합의 3개, 민사항소 15개, 형사항소 6개)
 - 서울중앙지법 10개 (민사합의 1개, 민사항소 6개, 형사항소 3개)
 - 의정부지법 2개 (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개 (민사합의 1개)
 - 인천지법 1개 (민사항소 1개)
 - 수원지법 2개 (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대전지법 2개 (민사항소 2개)
 - 대구지법 3개 (민사합의 1개²⁾, 민사항소 2개)
 - 부산지법 2개 (민사항소 1개, 형사항소 1개)
 - 광주지법 1개 (민사항소 1개)
- 2019. 상반기 전국 시범실시 재판부 간담회 및 재판부별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 2019. 하반기 소송대리인·변호인·공판검사를 상대로 한 외부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2019. 10. 말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세미나 개최 예정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의 확대 여부, 범위 및 적절한 사무분담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구성 기준(희망여부, 경력분포 등), 사무분담 지속기간
-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인적·물적 지원방안(재판연구원 배치 여부 및 인원, 배당감축 여부 및 기준, 전자기록화 등)

1) 이 중 1개 재판부는 2019. 8. 26. 구성됨

2) 2019. 8. 26.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 경력대등부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등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 논의의 필요성

- 2006. 4. 1.부터 공소가 제기되는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증거분리제출 시행되고 있으나, 당시 정재청구/공판회부 사건은 증거분리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정재청구/공판회부 된 약식사건 기록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에 따라 검찰청에 반환하지 않고 해당 법원의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되고 있으나, 현재 실무상 법원별, 재판부별로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판사들이 미리 소송기록을 읽고 예단을 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통상 사건과 구별하여 정재청구/공판회부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도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할 필요성이 상당함. 반면, 증거분리제출을 위하여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기록 분실 염려 및 제1회 공판기일 지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는 증거분리제출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 이에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 재판 실무의 통일적 시행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2006년 증거분리제출제도 실시
 - 2005. 4. 1. 서울남부, 대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
 - 2006. 3. 29.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제정
 - 2006. 4. 전국 18개 지방법원 시행 (공판회부사건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제외)
 - 2006. 10. 전국 지원 단위 확대 실시 (공판회부사건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제외)
- 2017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폐지
 -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로 인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수, 형사

단독공판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통상회부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등 사정 변경

● 2019년 현재 법원별, 재판부별 기록 반환 관련 통일적이지 않은 재판 실무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담당 재판부별 수사기록 반환 실무 상이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고양지
원, 부천지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수사기록 반환하는 실무례 있음
-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 대상이 모든 사건인지 부인 사건만인지, 반
환 시기가 공판회부 시인지 그 이후인지 등 실무례가 통일적이지 않음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

● 재판부 업무량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조희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후의 정재청구사건수의 변동,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참여관 등의 업무 변화 등 분석
- 법관 및 참여관/실무관 등에 대한 증거분리제출 관련 의견 조희

● 관련 예규의 개정 등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 기록송부 규정 삭제,
약식명령사건의 기록을 검찰청에 반환하는 규정 신설 여부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 개정 검토

● 수사기록 반환, 증거목록 제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개선절차에서 검찰 협력 방안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 논의의 필요성

- 우리나라가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는 파견국 국민이 체포·구속된 경우 영사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제5조(국민의 보호), 대한민
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제39조(구속 및 재판에 대한 기능), 대한민국과 중화
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제7조(구속 및 체포의 통보와 접견)에서도 유사한 조항
을 두고 있음
- 외국인 인신구속 시 위 조약에 따라 영사에 통보하거나 외국인에게 통보 관련 절차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과의 외교 마찰 소지, 재외국민 보호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음. 게다가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속 건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

■ 기존 논의 경과 소개

- 2017. 2.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외국인 구속 시 영사통보 규정에 관한 소고’ 검토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사통보에 관한 고지절차의 이행에 관한 예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 2017. 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외국인 영장실질심사와 비엔나협약’ 검토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사기관에 대한 통지요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므로 법원이 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적법절차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임
 - 급속을 요할 경우 재판장에 의한 집행지휘를 대비하여 필요사항 고지 및 통지의사 확인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함
- 2017. 4. 및 2018. 3. 서울남부지법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등의 사무처리와 영사관계조약에 관한 검토’
 - 영장실질심사 단계 : 재판장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영사기관에 통지를 원하는지 의사 확인 + 통지 원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사통보 절차를 보완하도록 명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보완서류를 수사기록에 편철 + 통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조서에 기재
 - 법정구속 단계 : 기본적으로 영사통보 절차 등 이행 의무 법원에 있음 + 다만 법원에서 영사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위의 경우에 준해서 실무상 처리할 수밖에 없음
- 2019. 3. 사법정책연구원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통보에 관한 연구’ 발간
 - 영사통보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법원의 역할(형사상 인신구속 시/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 시) 제도화 필요
- 위반시 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

▣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논의 필요 사항

- 형사상 외국인 인신구속에서의 법원의 역할 제도화
 - 영사통보의무가 있는지, 누가 영사통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규범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서의 법원의 역할 제도화
 - 영사통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법원 실무 운영이 감당할 수 있는 대상 선별(우선순위 결정), 규범화 방식 등

④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

-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주요 대법원규칙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가사소송규칙
 - 가사소송에 관한 절차 일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법원의 재판 사무의 처리(문서관리, 기록관리 등)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 규정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민사사건의 합의부 심판 범위, 가사사건의 합의부 심판 범위 등을 규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소장·상소장 기타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소가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접수 및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

- 민사소송비용규칙
 - 민사소송에 부수하는 각종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
- 민사조정규칙
 - 민사조정신청 및 이에 관한 절차,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
- 민사집행규칙
 - 민사집행에 관한 제반 절차(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
- 가사보호심판규칙
 -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등의 관할, 조사, 심리 등에 관하여 규정
- 소년심판규칙
 -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호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
- 인신보호규칙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사건의 관할, 심리 등에 관하여 규정
-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주요 내규·예규 등
 -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 가정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장사항, 사무분담,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 처리기준 등을 규정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 대리행위의 방식,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
- 위에서 제시한 규칙 이외에 재판제도와 관련한 규칙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의 회부에 따라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